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정가·수의매매 관련 규정을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고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서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정가·수의매매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를 도모함(안 제41조)
- 나.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매매방식으로서의 변경에 따른 품목제한 등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4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도 FTA농식품유통과와 합의되었음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 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 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 만,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5호서 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 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 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보 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 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 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삭 제>
제43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견고추, 마, 우엉, 연근, 갓, 취	

나물, 산나물, 달래, 고사리, 두
릅, 고들빼기, 죽순,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호박고
지, 박고지, 콩나물, 깎마늘, 고
춧가루, 도토리, 오렌지, 바나
나, 파인애플, 부추, 적겨자, 청
겨자, 적근대, 근대, 적치커리,
치커리, 청경채, 파세리, 케일,
뉴그린, 알배기, 신선초, 당귀,
비타민, 비트, 알비트, 레드, 치
콘, 샐러리, 양상추, 브로콜리,
레드쉬, 레몬, 적채, 마늘쫑, 열
무, 아욱, 들나물, 참나물, 비
름, 쪽갓, 깎토란, 상추, 파프리
카, 무순, 새싹, 석류, 망고, 자
몽, 체리, 포도(수입), 참다래
(키위), 피망, 블루베리, 버섯
류

2. 단무지, 절임류, 무침류, 묵류,
두부, 메주 등 단순가공 농산
물로 물량이 적은 품목

3. 기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가 또는 수
의매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②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시작전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반출된
경우 그 가격은 당일 동일품목,
동일등급의 거래가격 중 최고가
격으로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
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
지 제18호서식의 정가매매(수의
매매)결과보고서를 거래 다음날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 ⑦ 생략

[시행일 : 2014.9.25.] 제31조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2.2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3.11.29.>

1. 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3. 해당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5.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6.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한 거래물량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중도매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에게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전문개정 2012.8.23.]

제28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경매 또는 입찰

가.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로 정한 경우

다. 해당 농수산물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가.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

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바.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사.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3.]